

조례개정에 따른 알림

■ 조 례 명 :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(시행일: 2024. 2. 15.~)

■ 주요개정사항

○ (변경) 남양주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

- 종전: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이상

- 개정: **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**

■ 등록회원 협조사항

○ (2월 및 3월 프로그램) **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 환불신청서 작성 (증빙서류 지참)**

※ 감면적용기간: 02.15.부터 / 환불신청 접수기한: 02. 29까지

※ 본 개정사항에 대한 감면은 **남양주시 주민등록자**에 한함(관련 조례에 따름)

※ 중복 감면 대상자는 할인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(등록 시 신분증 및 확인서류 제시)

※ 확인서류: **(다자녀)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**